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302452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30245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3039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판결 선고 2019. 4. 25.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3039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